무배당 브레인케어 정신계질환통합치료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되어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 【일부 보장 제외】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 【보험금 삭감】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 【보험료 할증】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해당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 1년차 이자 = 100원(원금) × 10% = 10원
> - 2년차 이자 = (100원(원금) + 10원(1년차 이자)) × 10% = 11원
>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 및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대리청구인 관련 용어

가. 기명 대리청구인: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25조(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나. 무기명 대리청구인: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25조(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정신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정신계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특정정신계질환", "특정치매" 중 별표 3("정신계질환(2-5 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특정정신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 등의 진단기준을 근거로 정신과적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신계질환의 진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특정치매"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단확정의 경우, 상기의 검사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 가지 검사만 시행하여 확정할 수 없으며,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치매"의 경우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정신계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정신계질환 통합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정신계질환 통합치료"라 함은 제 2 항의 "정신계질환 통합치료(검사)", 제 3 항의 "정신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제 4 항의 "정신계질환 통합치료(입원)"를 총칭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정신계질환 통합치료(검사)"라 함은 "정신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정신계질환 통합치료항목		연간지급한도
검사	급여 MRI촬영	연간 1 회한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연간 1 회한
	급여 CT촬영	연간 1 회한

1. 제 5 조("급여 MRI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MRI 촬영"을 받은 경우
2. 제 6 조("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을 받은 경우
3. 제 7 조("급여 CT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CT 촬영"을 받은 경우

③ 이 특약에서 "정신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라 함은 "정신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정신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정신계질환 통합치료항목	연간지급한도

주요치료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	연간 1 회한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	연간 1 회한

1. 제 8 조("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 시간초과)"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 시간초과)"을 받은 경우
2. 제 9 조("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을 받은 경우

④ 이 특약에서 "정신계질환 통합치료(입원)"라 함은 "정신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정신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계질환 통합치료항목		연간지급한도
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연간 30 일한

제5조【"급여 MRI촬영"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MRI 촬영"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정신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급여 MRI 촬영 분류표(별표 4 "급여 MRI 촬영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의 "급여 MRI 촬영"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제6조【"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에 의하여 "정신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분류표(별표 5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의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7조【"급여 CT촬영"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CT 촬영 "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에 의하여 "정신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급여 CT 촬영 분류표(별표 6 "급여 CT 촬영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의 "급여 CT 촬영 "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8조【"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 시간초과)"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에 의하여 "정신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 시간초과) 분류표(별표 7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 시간초과)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의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 시간초과)"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9조【"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에 의하여 "정신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 분류표(별표 8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의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10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별표 3("정신계질환(2-5 종)"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법령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① 제 5 조("급여 MRI 촬영"의 정의)의 "급여 MRI 촬영", 제 6 조("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정의)의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제 7 조("급여 CT 촬영"의 정의)의 "급여 CT 촬영", 제 8 조("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 시간초과)"의 정의)의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 시간초과)" 및 ,제 9 조("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의 정의)의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의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MRI 촬영",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급여 CT 촬영",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 시간초과)",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에 준하여 보장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 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 4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종합병원을 더 이상 지정하지 아니하고 진료과별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 3 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특약내용 변경일의 15 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 회 이상 알립니다.

⑤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⑥ 제 3 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제 3 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후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정신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정신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신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정신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신계질환 통합치료(입원)"를 받은 경우

정신계통합치료항목별보험금		연간지급한도
정신계질환 통합치료 (검사)	급여 정신계질환 MRI촬영급여금	연간 1 회한
	급여 정신계질환 양전자단층촬영(PET) 급여금	연간 1 회한
	급여 정신계질환 CT촬영급여금	연간 1 회한

정신계질환 통합치료 (주요치료)	급여 정신계질환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금	연간 1 회한
	급여 정신계질환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금	연간 1 회한
정신계질환 통합치료 (입원)	정신계질환 입원급여금	연간 30 일한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4조("정신계질환 통합치료"의 정의) 및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급여 정신계질환 MRI촬영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CT 촬영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금"은 각각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하며, "정신계질환 입원급여금"은 연간 3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이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④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정신계질환 입원급여금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정신계질환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신계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연간 3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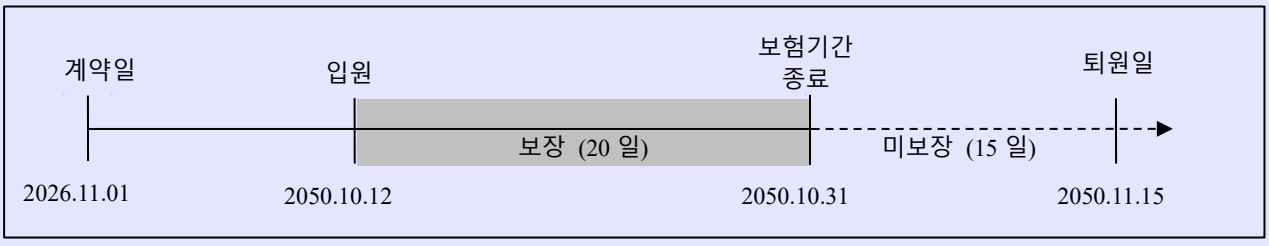
⑥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정신계질환 통합치료(입원)"은 연간 30 일 한도로 지급하며, 이 때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부터 매 1 년마다 도래하는 보험계약해당일(이하 "연 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⑦ 제 6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 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정신계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계약일 : 2026년 11월 1일

정신계질환 입원급여금 지급 예시



⑧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정신계질환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정신건강의학과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⑩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보험금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실에서의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⑪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 입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에 입원한 경우 회사는 정신계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⑫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정신계질환"의 진단을 목적으로 "정신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았더라도, 그 검사 결과 "정신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⑬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정신계질환 진단확인서, 검사결과지, 진료비 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 필수포함)), 진료비계산서,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료기록부 또는 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수가코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효력을 갖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17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 시 안내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6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등으로 인해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6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 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9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주계약 또는 특약에 의무부가 된 경우, 주계약 또는 특약 해지 시 해지 가능합니다.

제23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본형"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습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상품은 "기본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기본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에는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험료를 선납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시 약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을 말합니다.
3.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며, "기본형" 상품은 본 상품과 동일한 보장 내용의 비교·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습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대리청구인에 관한 사항

제24조【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5조【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이하, "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1. 제2항에서 정한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 지정)을 기명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으로 제3항 제3호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리청구인 지정 예시】
· **기명 대리청구인**
- 계약자가 기명하여 지정 : (예시) **"김 OO"**
· **무기명 대리청구인**
- 계약자가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지명 : (예시)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무기명 대리청구인 판단 예시】
· 보험 가입 당시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입 당시 해당 서류상 배우자 A)로 지정한 후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대리청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 B 인 경우
→ 해당 시점 대리청구인은 제 3 항 제 3 호로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B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대리청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6조(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따른 변경 지정 또는 제28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단,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리청구인 지정 신청서(회사양식)
2.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3.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24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계약자의 신분증
3.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4.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27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대리청구인은 제28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24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해당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기명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25조(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였으나 보험금 청구 시점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① 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정신계질환(특정치매) 진단확인서, 검사결과지 또는 사망진단서 등), 진료비 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 필수포함)), 진료비계산서,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료기록부 또는 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대리청구인의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9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정신계질환 통합치료항목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검사	급여 정신계질환 MRI촬영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정신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MRI촬영"을 받았을 때 (단,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급여 정신계질환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정신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을 받았을 때 (단,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급여 정신계질환 CT촬영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정신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CT촬영"을 받았을 때 (단,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주요치료	급여 정신계질환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정신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를 받았을 때(단,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급여 정신계질환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정신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를 받았을 때(단,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입원	정신계질환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정신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였을 때(단, 연간 30일을 한도로 함)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급여 정신계질환 MRI촬영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CT 촬영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금", "정신계질환 입원급여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중 일정액을 할인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상품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급여 정신계질환 MRI촬영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CT 촬영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금"은 각각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하며, "정신계질환 입원급여금"은 연간 3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이때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마다 도래하는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급여 정신계질환 MRI촬영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CT 촬영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금, 급여 정신계질환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금, 정신계질환 입원급여금 (제12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 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3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 시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 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별표3) 정신계질환(2-5종) 분류표

정신계질환(2-5종) 분류표

Ⅰ. 약관에서 규정하는 "정신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2 종	특정치매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F00
		2.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F02.0
		3. 파킨슨병에서의 치매(G20†)	F02.3
	특정정신계질환	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34
		5. 기타 기분[정동]장애	F38
		6.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F39
		7. 사회공포증	F40.1

		8. 특정 (고립된) 공포증	F40.2
		9.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	F40.8
		10.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	F40.9
		11.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F41.2
		12.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	F41.3
		13.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F41.8
		14.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F41.9
		15. 급성 스트레스반응	F43.0
		16. 적응장애	F43.2
		17.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F43.8
		18.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F43.9
		19. 해리[전환]장애	F44
		20. 신체형장애	F45
		21. 기타 신경성 장애	F48
		22. 식사장애	F50
		23. 비기질성 수면장애	F51
		2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정신 및 행동 장애	F53
3 종	**특정정신계질환**	25. 알코올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F04
		26. 치매에 병발되지 않은 섬망	F05.0
		27. 기타 섬망	F05.8
		28. 상세불명의 섬망	F05.9
		29.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F06
		30.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F07
		31.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F09
		32. 경도 우울에피소드	F32.0
		33. 기타 우울에피소드	F32.8
		34.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F32.9
		35.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경도	F33.0
		36.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관해 상태	F33.4
		37.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	F33.8
		38.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F33.9
		39. 광장공포증	F40.0
		40.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F41.0
		41. 범불안장애	F41.1
		42. 강박장애	F42
		43. 외상후스트레스장애	F43.1
		44.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F90.0
		45.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F95.1
		46.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장애[데라투렛 증후군]	F95.2
		47. 말더듬[말더듬증]	F98.5

4 종	특정치매	48. 혈관성 치매	F01
		49.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의 치매(A81.0†)	F02.1
		50. 헌팅톤병에서의 치매(G10†)	F02.2
		51.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 치매(B22.0†)	F02.4
		52.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F02.8
		53. 상세불명의 치매	F03
		54. 치매에 병발된 섬망	F05.1
	특정정신계질환	55. 조현형장애	F21
		56.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
		57. 유도망상장애	F24
		58.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59.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60.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F32.1
		61.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F32.2
		62.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F32.3
		63.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	F33.1
		64.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F33.2
		65.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F33.3
5 종	특정정신계질환	66. 조현병	F20
		67. 지속성 망상장애	F22
		68. 조현정동장애	F25
		69. 조증에피소드	F30
		70. 양극성 정동장애	F31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Ⅱ.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 급여 MRI촬영 분류표

급여 MRI촬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MRI촬영"로 분류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음에 적은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 류 번 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다-246

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분류표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로 분류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음에 적은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 류 번 호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다-339

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 급여 CT촬영 분류표

급여 CT촬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CT촬영"로 분류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음에 적은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 류 번 호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다-245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다-245-1

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 분류표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로 분류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 가 코 드
1.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별도]-12시간초과1일당	M5860
2.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별도]-12시간초과1일당(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 이용)	M0860

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분류표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로 분류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 가 코 드
1. 부분체외순환	O1901
2.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	O1902

3.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	O1903
4.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익일 이후 [1일당]-10시간 초과 계속 사용	O1904
5. 부분체외순환-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	O1905
6.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	O1906

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